

서울고등법원 2021. 10. 13 선고 2021나2013200 판결 [매매대금(시효연장)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C 주식회사(변경 전 상호: A 주식회사)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

담당변호사 성주경

변 론 종 결 2021. 9. 15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3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3. 24. 선고 2020가합990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448,836,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11. 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 다만,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~8행의 “그러나…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,”을 “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”으로 고쳐 쓴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홍지영, 판사 김영훈, 판사 홍승구